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4. 21 선고 2020가단31261 판결 [선급공사대금반환 등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안교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구분덕, 이주성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7,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8. 10. 피고에게 칠곡군 C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4,900,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도면 및 도서) 원고(이하 이 표 내에서 “갑”이라 한다)가 제공한 허가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공사도면 및 피고(이하 이 표 내에서 “을”이라 한다)가 제출한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도면 및 내역 변경 시 갑의 구두 또는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제7조(사양변경 및 추가공사)

1. 본 공사의 시공 중이라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양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갑, 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시공 중 을 측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사양 변경에 대하여는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공사 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는 합의하여 별도 공사로 진행한다.

※ 특약:

1. 상세한 공사내용은 제출된 견적 및 공사내역서를 근거로 한다. * 공사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공사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선급금으로 피고에게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9. 12.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4) 피고가 공사 중단 전까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95,879,861원이다.

5) 한편,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는 아래 표 내역과 같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지 않거나 부실 시공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가 존재하여, 그 하자를 보수하는데 합계 23,967,447원이 소요된다.

순번	내역	하자보수비(원)
1	기초공사 부분 중 콘크리트 타설 및 철근 작업 하자	14,282,707
2	배수관 규격 하자	408,623
3	배수관 연결 불량 하자	30,576
4	다락 서까래 하자	9,245,541
합계		23,967,44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감정인 D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부분에 이 사건 하자가 존재하여 그 하자보수비로 23,967,447원 상당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으로 위 23,967,4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

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금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금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그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2019. 12.경 해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그때까지 피고가 수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95,879,861원인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기성공사대금 15,879,861원(= 95,879,861원 -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

가) 원고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무렵에는 이행기가 도래하여 같은 날 피고의 기성공사대금 채권과 상계 적상에 있었고,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2022. 3. 7.자 준비서면¹⁾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것은 기록상 분명하다.

나) 이로써 피고의 기성공사대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였으며, 소멸 후 남은 원고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 채권은 8,087,586원(= 23,967,447원 - 15,879,861원)이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087,5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서 피고에게 그 하자보수비 등의 지급을 구한 다음 날인 2020.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최초 공사내역에 없는 전통구들공사에 대하여 4,950,000원, 보강토 작업

공사에 대하여 3,704,000원, 한옥 목구조 작업에 대하여 17,550,000원, 정화조 설치 우수배관 작업에 대하여 1,600,000원 등 합계 27,804,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추가공사내역을 감정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감정 결과 기성공사대금 산정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추가공사대금을 총 기성공사대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판단

-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 2)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감정인 D는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의 이 사건 공사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추가 사항 등을 포함한 내역(기존계약 중 기성금액 + 추가금액)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의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하였던 점, ② 피고는 감정인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위 27,804,000원의 추가 공사가 기성공사대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추가공사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감정인은 피고가 제출한 위 추가공사의 내역까지 검토하여 기성공사대금이 95,879,861원이라고 감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작성한 을 제1호증(추가공사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27,804,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추가공사대금이 총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빈

- 1) 원고는 2022. 3. 7.자 준비서면에서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피고의 기성고 대금 중 원고가 지급한 선금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제한 돈을 청구금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잔존 기성고 대금 채권과 원고의 하자보수비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의사표시로 본다.